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인구의 92%가 도시에 거주, 미세먼지, 폭염 등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의 생활SOC계획('20~'22)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도시지역 등 접근성이 양호한 곳 위주로 설치가 필요하나 도시 주변은 대규모 산림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생활권인 도시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자연휴양림의 타당성 평가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생활권내 자연휴양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구성원의 자가 면역력 증진이 중요한 화두로 부각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심형 복합산림치유공간으로서 치유의 숲 조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도시지역 내 치유의 숲 타당성 평가 면적 기준 및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제한을 완화하여 생활권 SOC 형태의 치유의 숲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의5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대상지의 산림면적이 13만제곱미터 이상부터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은 자연휴양림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3항제1호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이하 “녹지지역”이라 한다)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3항제2호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녹지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3항제3호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녹지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4층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5제1항제3호가목 본문 중 “30만 제곱미터”를 “20만제곱미터”로, “20만제곱미터”를 “13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숲을 녹지지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제9조의2(치유의 숲시설의 종류·기준 등) ① 삭 제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치유의 숲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서 신설>

2. 치유의 숲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2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서 신설>

제9조의2(치유의 숲시설의 종류·기준 등)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1. -----

--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이하 “녹지지역”이라 한다)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

----- 것. 다만, 녹지
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서 신설>

④ (생략)

제9조의5(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연휴양림등의 대상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2. (생략)

3. 면적: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은 그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일 것

가. 자연휴양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그 밖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지역의 경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
----- 것. 다만, 녹지지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4층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5(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가. -----

----- 20만제곱미터 -----

----- 13만제곱미터. -----

우에는 조성주체와 관계없이 10만제곱미터로 한다. 나. (생략) <u><신설></u> 4.·5. (생략) ② (생략)	----- -----. 나. (현행과 같음) <u>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숲을 녹지지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로 한다.</u>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연 락 처	(042) 481 - 4211